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공보담당관 형사2부장 김지숙
전화 063-472-4408 / 팩스 0502-193-8220

보 도 자 료
2024. 10. 30.(수)

제 목

**국립대 총장의 풍력기술개발 사업 관련
국가지원비 편취 및 뇌물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금일(10. 30.)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이 전담하는 '대형 해상풍력터빈 해상 실증 기술개발'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甲 국립대학교 교수 A(現 총장)**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 22억 상당의 국가지원 사업비를 편취**하고, 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한 **乙 업체 대표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 등을 한 사건을 수사하여,
 - **A,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 前 단장 B,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법인)을 각 불구속 기소** 하였습니다.
- 검찰은 송치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 및 법리 검토, 디지털 포렌직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 **A가 국가지원 사업비 2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과 乙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였고,
 - ① **A 및 산학협력단장 B가 위 국가지원 사업비를 편취하기 위하여 丙 공사업체에 요구하여 丙 공사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범행**
 - ② **A가 乙 공사업체 직원에게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범행을 각각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 본건은 A를 정점으로 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국가지원금을 편취하고, 유착 관계에 있는 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대가로 뇌물을 약속하는 등 대학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구조적 비리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지원 사업의 혼란,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자금 편취 범행**' 및 유착관계를 토대로 공무집행의 공정을 해하는 '**뇌물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I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공소사실의 요지	처분
<p>A (59세, 甲 대학교 교수이자 前 해상풍력연구원장 甲 대학교 現 총장)</p>	<p>▶ 국책사업인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총괄 진행하던 중, 피해자 에너지기술평가원이 '21. 6.경 사업중단 결정을 하면서 '21. 6. 30.까지 이행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RCMS(산자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허락하였음에도, '22. 2.경 '21. 6. 30.까지 이행되지 않은 공사 및 본건 사업의 공사업체 丙이 아닌 다른 업체의 공사내역도 이행완료된 것처럼 RCMS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丙에 약 22억원을 지급하게 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p>	<p>불구속 기소 (구속 수사 중 적부심 에서 석방)</p>
	<p>▶ '22. 3. 25.경 甲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B와 공모하여, 丙 건설업체(대표 D)로부터 공급가액 약 4억 8,000만 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 [조세범처벌법위반] ※ 검찰 추가 인지</p>	
	<p>▶ '18. 10. 15.~31.경 국립대 교수로서 본건 사업을 총괄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본건 사업 관련 설계공사 수주 등 각종 이권 제공의 대가로 乙 건설업체 대표 D로부터 3억 원의 수수를 약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p>	
	<p>▶ '19. 12. 4.경 국립대 교수로서 본건 사업 총괄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공사 수주 등 각종 이권 제공의 대가로 乙 건설업체 직원 C에게 3억 원을 요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검찰 추가 인지</p>	
<p>▶ '19. 1.~2.경 본건 사업 연구원의 연구수당을 착복할 의사였음에도 정상 지급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甲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 명의 계좌로 4회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2,700만 원을 돌려받음 [사기]</p>		

<p>B (64세, 甲대학교 교수, 甲대학교 前 산학협력단장</p>	<p>▶ '22. 3. 25.경 A와 공모하여, 丙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약 4억 8,000만 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 [조세범처벌법위반] ※ 검찰 추가 인지</p>	<p>불구속 기소</p>
<p>甲 대학교 산학협력단(법인)</p>	<p>▶ '22. 3. 25.경 대표자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 [조세범처벌법위반] ※ 검찰 추가 인지</p>	

II 수사 경과

- '22. 3. 30. 서해해경, A의 사업비 편취 혐의 수사 진행
- '23. 10. 26. 서해해경, 군산대 및 A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 '24. 6. 서해해경, A의 뇌물약속 인지 후 조사, 관련자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
- '24. 8. 9. 군산지원, A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24. 8. 16. 서해해경, A에 대한 구속 사건 송치
- '24. 8. 군산지청, 관련자들 조사, 압수물(디지털포렌직 자료) 분석하여 관련 물증 확보 등 송치 후 보완수사 진행
- '24. 8. 28. 군산지원, A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 및 당청 항고 제기(10. 2. 항고기각)
- '24. 9.~10. 군산지청, A, B, E, 군산대 산학협력단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뇌물요구 혐의 수사 진행 후 고발 의뢰(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인지
※ '24. 10. 18. 군산세무서, A, B, 군산대 산학협력단에 대해 고발 조치
- '24. 10. 30. 군산지청, A, B, 甲대학교 산학협력단 각 불구속 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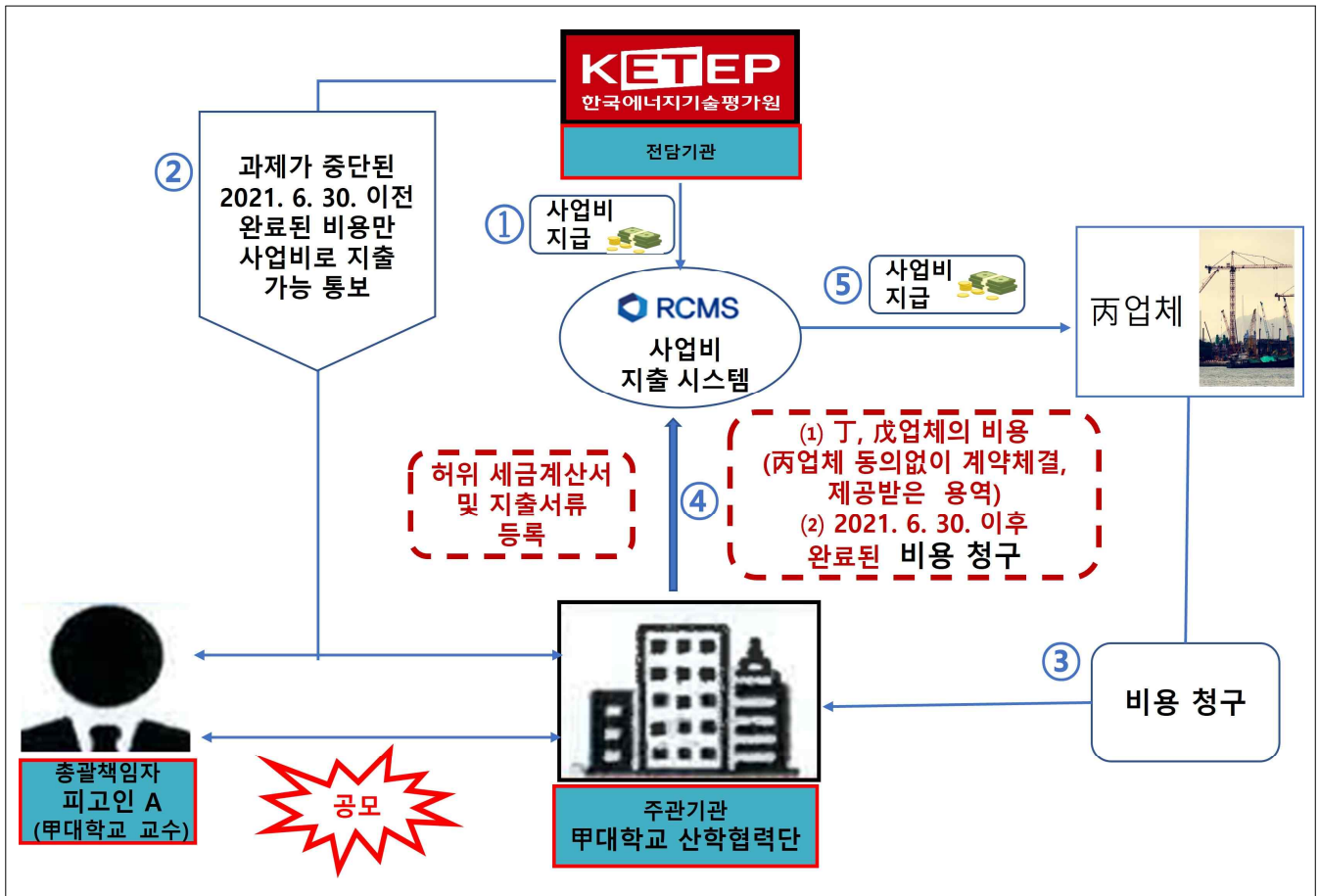
① 수사 초기부터 사경과 협조 및 송치 후 수사를 통해 혐의 명확히 규명

- 본건은 甲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 지원사업인 ‘대형 해상풍력터빈 해상 실증 기술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지원금 편취 및 뇌물 사건으로,
- 사경의 영장 신청 절차를 비롯한 송치 전 수사과정에서 사경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비의 청구 및 지급 절차에 관한 면밀한 수사 및 법리 검토를 통해 국가지원금 편취 관련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복잡한 구조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확인함
- 사업비 지급 과정은 ① 전담 국가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주관기관인 甲대학교 산학협력단의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 계좌로 연구비 지급, ② 주관기관에서 해당 사업비 보관, 지출사항 발생시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 등록, ③ 주관기관의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가 거래처 계좌로 이체되는 구조임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관기관이 사업비 지출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해당 지출서류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즉시 사업비가 지급되는 위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하여, A는 사업비 지급 기준시점이나 사업비 지급대상에 관하여 국가가 제시한 조건에 반하는 허위의 정산서류를 등록하여 국가자금을 편취할 수 있었음
- 군산지청은 철저한 송치 후 수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업비 지급 과정에서 A를 정점으로 한 본건 사업 관련자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사업비 편취 등 범행과정을 명백히 밝혀내 기소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에 RCMS의 취약한 구조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통보하였음

○ 송치된 사업비 편취 범죄사실 중 '정산 기준시점을 속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사업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정산 기준시점의 기망'을 부인한 행정 소송 사건까지 검토한 후 면밀한 송치 후 수사를 통해, '사업비 지급 대상 관련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추가로 밝혀 혐의 입증함

- 본건 피해금액 22억 원 상당의 지급대상은 丙 업체이나, 관련 지출서류에는 丙 업체와 계약관계가 없는 丁업체, 戊업체가 이행한 5억 원 상당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자 조사 및 디지털포렌직 자료 등 물적 증거까지 확보하여, A의 지시로 丙 업체가 아닌 별건업체가 이행한 공사내역도 포함하여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을 밝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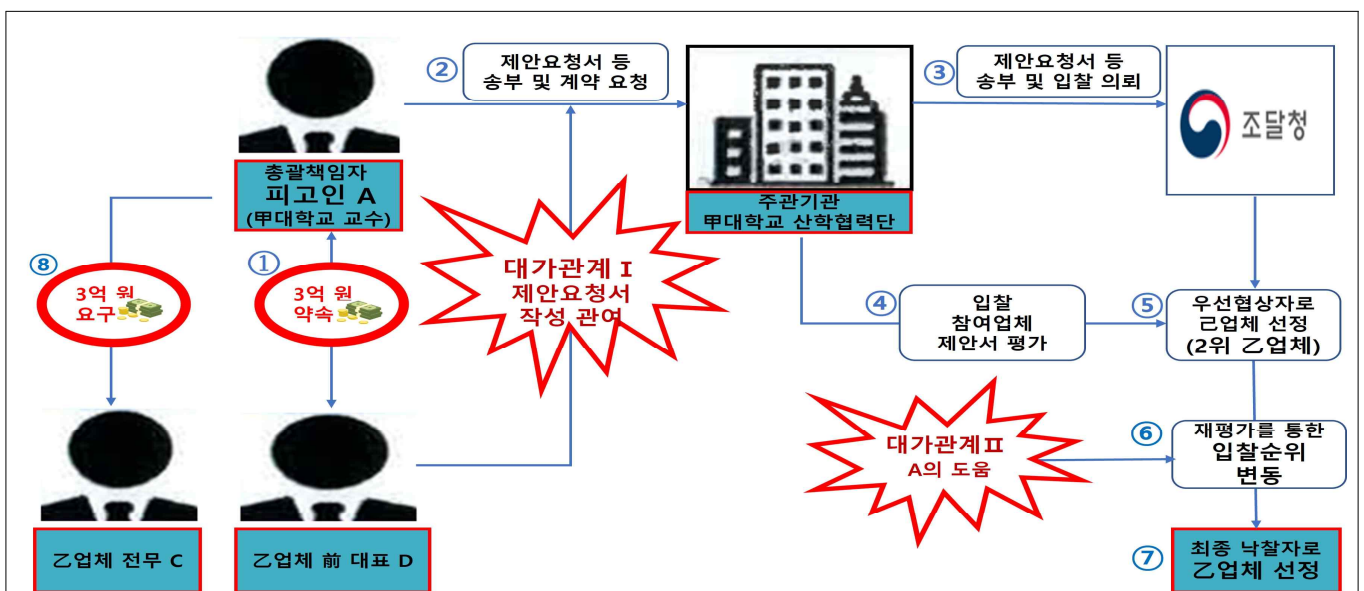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구조



② A와 입찰 참여 업체의 유착관계 및 뇌물 범행 명확히 규명

- 이 사건은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주관자인 대학 관계자의 특정 업체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및 뇌물범행 등 유착관계에 기인한 구조적 비리행위가 확인된 사안임
 - 군산지청은 철저한 송치 후 수사를 통해 범행동기, 유착업체에 대한 이권제공의 대가관계를 상세히 규명하고, 추가 뇌물범죄를 밝혀내 기소함
- 뇌물범행의 동기로서, A와 乙 업체 대표의 유착관계 및 대가관계 규명
 - 군산지청은 철저한 송치 후 수사를 통해, 본건 사업 관련 설계용역 공사 입찰 과정에서, ▲ 甲 대학교의 입찰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표 작성 등 입찰 준비 단계에서부터 乙업체 대표 D가 관여한 사실 ▲ 입찰 결과 乙업체가 낙찰되지 못하자, 재평가를 통하여 乙업체가 낙찰되도록, 乙업체의 이의신청 등 과정에 A가 개입하여 도와준 사실을 밝혀냄
- A는 본건 사업 관련 위와 같은 이권을 乙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乙업체 대표 D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과정 전반을 밝혀냄
 - 乙업체에서 공사 전·후로 작성된 입찰견적서, 정산서류 등 방대한 양의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 송치 후 수사를 통해 범행일시를 특정하고, 뇌물약속범행을 명확히 입증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범행 관련, A와 乙업체 간의 유착관계



③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저지른 추가 범행을 밝혀내어 함께 기소

○ A 등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금 관련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에 계약업체인 丙 업체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丁 업체, 戊 업체가 이행한 공사에 관한 내역도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자 조사, 디지털포렌직자료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 A의 요구로, 丙 업체가 5억 원 상당의 丁업체, 戊업체의 용역까지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甲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인 B가 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 관할세무서와 협조하여, A, B, 甲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발받아 기소¹⁾

○ A와 유착관계에 있던 乙 업체 직원에 대한 뇌물요구

- A가 乙업체 대표 D의 퇴사 후, 업체 직원 C에게 3억 원의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후, 물적 자료 수집, 방대한 양의 디지털 포렌직 자료의 분석,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뇌물을 요구한 일시·장소, 대가관계 등 뇌물요구 범행을 명확히 입증하여 기소

IV

향후 계획

- 군산지청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지원 사업의 혼란,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자금 편취 범행’ 및 유착관계를 토대로 공무집행의 공정을 해하는 ‘뇌물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 ☑

1) 丙 업체 대표자 E 및 丙 업체에 대하여는 A 등 甲대학교 측의 지속적인 요구로 부득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점 등 고려하여, 세무서에서 통고처분(미고발)